

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(제15조제9항 관련)

시험의 종류	인증등급	가점
한국사능력검정시험 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	3급 이상	0.5점

비고: 위 표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
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
한다.